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21
----------	-----

2021. 6. 23.(수)  
교 육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- 나. 제출일자: 2021년 5월 31일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1일
- 라. 상정일자: 2021년 6월 11일

(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박승렬)

가. 제안이유

- 평생학습관 업무를 부서간 업무 조정함에 따라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」 구성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

- 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변경
-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혁신과장, 미래인재과장, 재무과장을 지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수석전문위원 홍만표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학습관 업무 담당부서의 조정에 따라 ‘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’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그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교육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 위원은”을 “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학교혁신과장, 미래인재과장, 재무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<u>교육국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<u>위원회</u>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교육감</u>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행정국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③ <u>위원회</u> 위원은 <u>당연직</u> 위원과 <u>위촉직</u>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당연직</u> 위원은 <u>학교혁신과장</u>, <u>미래인재과장</u>, <u>재무과장</u>으로 하고, <u>위촉직</u> 위원은 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평생교육법」

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5. 29.>

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
1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
2. 평생교육 상담

3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
4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

5. 제21조의3에 따른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
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28.>

### □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
  2.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 전문가
  3. 평생교육관계 공무원
  4. 평생학습관의 관장
  5. 그 밖에 교육감이 평생학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.
- <개정 2017. 3. 17.>